

환경영향조사 대행자 [] 등 록 신청서 [] 변경등록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등록 : 7일 변경등록 : 5일
신청인	성명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)		생년월일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)		전화번호
사무실 소재지	(전화번호:)		
변경내용	변경 전		변경 후

「먹는물관리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(변경등록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 · 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록 신청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. 장비명세서(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) 1부 다.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.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증 원본 	<p>수수료</p> <p>등록 : 50,000원 (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5,000원)</p> <p>변경등록: 30,000원 (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7,000원)</p>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) 국가기술자격증(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) 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